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 
관  
람

기관의장

제1696호 2022. 9. 13.(화)

## 차 례

### 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18호 도시관리계획(불로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————— 1
-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2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————— 3

#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26호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 ————— 6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29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————— 8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—— 11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————— 19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43호 행복한 서로이음 (임대주택) 입주희망자 채모집공고 ————— 27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49호 도시관리계획(북향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공고·열람 ————— 34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652호 인천도시관리계획【공원조성계획(최초):가좌진주 소공원】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 ————— 37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-118호

## 도시관리계획(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도시관리계획(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계획과, ☎ 032-560-6874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

2022. 9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결정(변경) 취지

-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 마목의 도시관리 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는 사항임

### 2. 위치

-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일원

### 3. 도시관리계획(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
-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도면 표시 번호	구역명	위치	면적 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-	블로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	서구 불로동 일원	75,119.0	-	75,119.0	

나.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다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결정(변경)

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○ 단독 및 다세대주택용지(A-1)(변경)

기정						변경					
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비고	도면 표시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비고
			위치	면적(㎡)					위치	면적(㎡)	
A-1	6	2,594.8	3	254.6		A-1	6	2,594.8	3	768.7	
			4	254.5					7	765.3	
			5	259.6							
			7	255.2							
			8	255.1							
			9	255.0							

○ 변경 사유서

변경 내용	변경 사유
○ 획지계획 변경 - 단독 및 다세대주택용지(A-1) · 6-3, -4, -5 → 3 · 6-7, -8, -9 → 7	○ 획지계획 변경을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

2) 건축물에 대한 용도·밀도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3)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4) 건축물의 용도·형태·외관·배치·색채 등에 관한 계획(별표참조)(변경없음)

4. 지형도면: 게재 생략(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)

○ 토지이음(<http://www.eum.go.kr>)에서 열람 가능

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-120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

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,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·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. 9. 13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○ 부여·폐지 도로명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9-11 외 12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부여(폐지) 사유	도 로 명 고 시 일	도 로 명 부 여 사 유
		별 도 열 략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(☎560-4830)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[www.juso.go.kr](http://www.juso.go.kr)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22.9.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2-9-13

연번	지번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4-5	인천광역시 서구 비즈니스로194번길 9-11 (청라동)	20201012	도로의 기점이 접한 대로, 로의 기초번호로 도로명부여	
2	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35-13	인천광역시 서구 열곡로220번길 23 (석남동)	20090922	열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,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3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6-9	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117번길 14-7 (마전동)	20081231	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4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-31, 943-32, 943-33, 943-4	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305번길 55 (당하동)	20171025	드림로 시작지점부터 약3,05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5	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943-33, 943-41, 943-66, 943-4	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305번길 53 (당하동)	20171025	드림로 시작지점부터 약3,05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6	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167-20	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117번길 72 (마전동)	20081231	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,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	
7	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654-8	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42-3 (급곡동)	20090710	지역명칭 인용	
8	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655-8	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42-4 (급곡동)	20090710	지역명칭 인용	
9	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655-9	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42-8 (급곡동)	20090710	지역명칭 인용	
10	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653	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44-3 (급곡동)	20090710	지역명칭 인용	
11	인천광역시 서구 급곡동 653-1	인천광역시 서구 향동로 44-1 (급곡동)	20090710	지역명칭 인용	
12	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634	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114-28 (대곡동)	20130730	법정동 명칭 반영	

##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

고시일 : 2022-9-13

연번	도로명주소	폐지사유	도로명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	비고
1	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692 (심곡동)	건축과-36520(222.9.2.)호에 의거	20090922	전일업을 생산하던 마을이 있던 곳을 통과하는 도로	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1626호

##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 공고

도로법 제61조(도로의 점용 허가) 및 제75조(도로에 관한 금지행위) 등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4조(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)에 따라 노상 적치물 등을 제거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(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), 제76조(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) 및 시행규칙 제37조(적치물 등의 관리 등)에 따라 적치물 등의 보관 장소 및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9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**공고내용** : 도로 불법 노상 적치물 등 보관 및 처리
2. **공고기간** : 2022. 9.13. ~ 2022. 9.28.(16일간)
3. **법적근거** :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제74조, 제75조,  
같은 법 시행령 제75조,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37조
4. **공고방법** :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, 구보 및 전국 시·군·구 게시판

## 5. 보관목록 : 공고 대상(세부 붙임 참조)

적치물등의 품명·규격·수량	위반 장소	보관일시 및 장소	취급자	비고
드럼통 2건	석남동 517-3, 석남동 560-18	2022. 9.13. ~ 2022.10.13.(1개월) 원창동 385 일원	인천광역시 서구청	
포장마차 1건	석남동 517-3			
타이어 6건	가좌동 173-661, 백범로630번길 16			
통 12건	가좌동 173-661, 석남동 560-18, 백범로630번길 16			
라바콘 6건	가좌동 173-661, 가정동 499-26			
주차금지판 2건	가좌동 173-661			
파레트 2건	석남동 655-32			
돌 2건	석남동 546-26			
나무판 4건	가좌동 114-5			
주차금지봉 2건	석남동 560-18			

## 6. 적치물처리

가.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적치물 등을 반환받을 소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반환 요구가 없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76조(적치물 등의 반환과 귀속)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청에 귀속 · 폐기처분되며,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, 적치물의 제거 · 운반 · 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

7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과(☎ 032-560-448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1629호

##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22조(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)에 따른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제3항 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9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공 고 기 간 : 2022. 9. 13. ~ 2022. 9. 27(15일간)

### 2. 공 고 내 용

1. 행정처분 제목		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			
2. 대상차량	등록번호	69모7819 등 10건(붙임 참조)			
	차 명				
3. 운행정지사유		소유자의 요청 등			
4. 법적근거		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(자동차의 운행정지 등)			
5. 관할관청		기관명	인천광역시 서구청	담당부서	차량민원과
		주소	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 (☎ 032-560-4877, FAX 032-560-2793)		

### 3. 유 의 사 항

- 1)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2)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- 3)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(무등록 자동차)를 운행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4. 문 의 처 : 인천광역시 서구청 차량민원과 차량관리팀(☎ 032-560-4877)

## ■ [붙임]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

연번	자동차등록번호	차명	소유자명	운행정지명령 등록일
1	69모7819	A6 40 TFSI	**캐피탈(주)	2022.08.03
2	27호6540	그랜저(GRANDEUR)	**캐피탈(주)	2022.08.08
3	67하8141	쏘나타(SONATA)	***캐피탈(주)	2022.08.12
4	20라7097	SM5	이*탁	2022.08.17
5	257로3334	마세라티 기블리 S Q4	최*미	2022.08.19
6	157오4708	K7	임*병	2022.08.22
7	52하2712	G4 렉스턴	***캐피탈(주)	2022.08.22
8	52하2771	그랜저(GRANDEUR)	***캐피탈(주)	2022.08.25
9	48거7611	e-tron 55 quattro	*****캐피탈(주)	2022.08.29
10	64저0759	EQ900	(주)*****네이처	2022.08.30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1639호

#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. 9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 1. 입법취지(개정이유)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42조에 5항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 달성(양성평등 실현 촉진)을 위해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31조제3항)은 이자수익금의 축소로 기금 원금 사용을 위해 삭제하고자 함.

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가정보육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※ 의견제출처

- (우22726)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 서구청 제2청사 12층  
가정보육과(여성가족팀)

- ☎(032)560-5732, email : chamnamu@korea.kr

\* 의견 제출 후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

#### 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##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

자 치 법 규 명	「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(안)
제정(개정·폐지)이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근거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 42조 5항에 따른 기금 설치 목적 달성(양성평등 실현 촉진)을 위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며,</li> <li>○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적극 편성하여 기금 설치 목적 달성에 중점을 두고자 함.</li> </ul>
주 요 내 용	○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31조제3항) 삭제
제정(개정·폐지)안	“별 지 참 조”
신·구조문대비표	“별 지 참 조”
관계 법령 발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2조(기금의 설치)</li> <li>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</li> </ul>
관련 사업 계획	
예산 수 반 사항	“해 당 없 음”
기 타 참 고 사 항	

##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# 1. 제안(개정)이유

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42조에 5항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 달성(양성평등 실현 촉진)을 위해 기금 조성 원금을 사업비로 편성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

### 2. 주요내용

- 제31조(기금의 관리·운용)제3항 삭제
  - “기금은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.” 삭제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“별첨”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: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3항을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·② (생략) <u>③ 기금은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           수입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.</u>	제31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<u>&lt;삭제&gt;</u>

# 관계 법령 발췌

## □ 양성평등기본법 42조(국가 등의 책무)

제42조(기금의 설치 등)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의 출연금
2.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
3. 기금의 운용수익금
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③ 기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운용·관리한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「은행법」 제2조 제1항 제2호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1641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. 9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입법취지(개정이유)

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를 위해 개정

### 2. 주요내용

지원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7개월로 변경하여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함(안 제4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가정보육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·성명(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) 및 전화번호

※ 의견제출처

- (우22726)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 서구청 제2청사 12층  
가정보육과(여성가족팀)
- ☎(032)560-5738, email: ghdqls30@korea.kr
- \* 의견 제출 후 수신 여부 확인 바랍니다.

4. 참고자료

-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.

## 자치법규 정비안 요약서

자 치 법 규 명	「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조례」 일부 개정 조례(안)
제정(개정·폐지)이유	○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를 위해 개정
주 요 내 용	○ 지원 기간 개정(안 제4조) - 지원 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7개월로 확대하여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함
제정(개정·폐지)안	“별 지 참 조”
신·구조문대비표	“별 지 참 조”
관 계 법 령 발 취	○ 「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 및 제8조
관 련 사 업 계 획	
예 산 수 반 사 항	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
기 타 참 고 사 항	

#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이유

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를 위해 개정

## 2. 주요내용

지원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최대 7개월로 변경하여 아빠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함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제4조 및 제8조

나. 예산조치: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

다. 합 의: 감사담당관, 가정보육과 협의

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1항 전단 중을 “3개월간”을 “7개월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“3개월”을 “7개월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지원 기준)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이하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수급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에서 최대 <u>3개월간</u>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<u>3개월</u>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,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지원 기준) ① ----- ----- ----- -- <u>7개월간</u> -----. ----- <u>7개월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## 관계법령 발췌

### ■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·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·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

제8조(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1643호

## 행복한 서로이음 (임대주택) 입주희망자 재모집공고

인천광역시 서구에서는 주택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무상(최소 보증금)으로 임대하는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임대대상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주희망자를 재모집합니다.

2022. 9. 13.

###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신청기간: 2022. 9. 19. ~ 2022. 10. 14. 18시 까지 (25일간)
2. 신청자격: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서구거주자이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

순위	입 주 자 격	증빙서류
1순위	차상위계층	· 차상위계층증명서 1부. 주민등록초본 1부.
2순위	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예술인	· 청년창업자는 사업자증명서 1부. 주민등록초본 1부. · 청년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서 1부.(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인증) 주민등록초본 1부. ※ 청년창업자와 청년예술인은 모집공고일 기준 만19세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
3순위	(예비) 신혼부부	· 예식장 계약서(예비부부 검증용 자료)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 ※ 예비신혼부부는 6개월내 결혼 예정인 부부,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인 부부
4순위	한부모가정	·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. 주민등록초본 1부.

### 3. 신청방법

- 접수 처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23(심곡동, 세민빌딩), 4층  
도시재생과 [☎ 032-560-4595, 4591]
- 신청방법: 입주신청서(붙임1) 및 증빙서류와 붙임3 개인정보 수집·이용  
및 제공 동의서를 구비 후 직접방문(방문접수는 근무시간에  
한함) 또는 팩스(☎ 032-560-2749)로 신청

※ 팩스 신청 시 반드시 유선으로 도착 여부 확인 필요하며 서류미비 시 접수 불가

### 4. 입주자 선정방법

-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입주 우선순위 결정
  - 1순위 입주 우선순위는 신청인의 인천 서구 연속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
  - 1순위 입주 적합 대상자가 없는 경우 2순위, 3순위, 4순위 순서대로  
모집하되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 서구 연속 거주기간이  
오래된 사람 선정
- 입주예정자 사정상 미입주를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임대주택별로 3배수 모집
  - 예비입주자 결정은 신청 임대주택별로 1순위가 우선이며, 2순위, 3순위,  
4순위 순서대로 모집
  - 예비입주자의 입주자격 유효는 금회 임대주택에 한해 공고일부터 1년간  
유지됨

### 5. 결과발표

- 일 시: 2022. 10. 27.(목) 15:00 이후
- 방 법: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에게만 개별 통보(유선) 하며, 미당첨자는  
통보하지 않습니다.

### 6. 입주가능(예정)일: 입주자 결정 이후 즉시(임대자와 협의 후 결정)

## 7. 임대주택 현황

임대주택 번호	위 치	모집 세대	임대 현황				임대료 (만원)		임대기간
			구 조	해당층	방수	면적(m <sup>2</sup> )	보증금	월세	
2022-1	인천 서구 석남동 469-4번지, 힐튼빌라 에이동 지하2호	1	철근콘크 리트조	B1	3	39.06	500	-	5년

## 8. 유의사항

- 신청자는 임대주택 1개소만 신청해야 함. (2개 신청 불가)
- 위 임대주택은 인천광역시 서구와 주택소유자가 협약을 통해 임대기간 동안 차상위계층, 청년창업자 등에게 임대하기로 약정한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임
  - \* 임대기간이란, 주택소유자가 서구와 협약을 맺고 최초 임대차 계약한 날로부터 기간을 말함
- 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결과는 서구와 주택소유자간의 협약을 실현하기 위한 임의방식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효력이나 권리관계와 무관하며, 주택소유자와 별도 협의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- 서구는 위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며, 시설물의 유지관리 권한이 없고 주택소유자가 건축물 관리를 함
- 임대차계약은 건축물소유자와 입주자 상호간에 계약을 체결함

## 9. 기타 문의사항: 서구청 도시재생과 도시정비팀[☎ 032-560-4595, 4591]

## 10. 입주신청서식 및 입주설명서: 서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

- 붙임 1. 행복한 서로이음 임대주택 입주신청서 1부.  
 2. 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입주 설명서 1부.  
 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. 끝.



## 붙임 2

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행복한 서로이음 빈집 입주 설명서</h2> <h3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임대주택번호 2022-1, 5년 임대]</h3>							
건물현황	소재지	인천 서구 석남동 469-4 힐튼빌라 제에이동 제지하층 제2호			건축 년도	1990년	
	층수 / 면적(m <sup>2</sup> )	지하층 / 39.06m <sup>2</sup>			구조	철근콘크리트조	
	시설현황	주거형태 (단독, 다세대 등)	방	주방	화장실	기타	
다세대		3	1	1			
임대계획	공급인원 및 입주대상			임대료(만원)			입주예정일
	공급인원	입주자격	남녀 구분	전세	월세	보증금	
	1세대 (2인이상)	차상위계층 청년창업가 및 청년예술가 신혼부부 한부모가정	없음	-	-	500만원 (오백만원)	입주자 결정 후 즉시 가능 (임대자 후 협의 후)
비치 품목							
참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▷ 주택설명서는 입주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임</li> <li>▷ 해당주택은 5년간 임대조건이며, 기간 만료 전 퇴거를 원할 경우 사유 발생 즉시 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, 기간 이후 연장은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</li> <li>▷ 입주예정일은 사정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</li> </ul>						

# 행복한 서로이음 입주 설명서

위치도



현장  
사진



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1649호

## 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 공고 · 열람

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입안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9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I. 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2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  - 가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  - 나.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    - 1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)
      - 가) 공업용지(변경)

#### [기 정]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 적(㎡)	위 치	획 지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면적(㎡)	
I	I-5	27,133.1	1-1	3,388.85	-	
			1-2	3,388.85	-	
			2-1	3,399.05	-	
			2-2	3,399.05	-	
			3	6,770.30	-	
			4-1	3,393.50	-	
			4-2	3,393.50	-	

#### [변 경]

도면번호	가구 번호	면 적(㎡)	위 치	획 지	필 지	비 고
				면적(㎡)	면적(㎡)	
I	I-5	27,133.1	1	20,362.80	-	
			3	6,770.30	-	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번호	위 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I	I-5	○ 획지 합병 1-1, 1-2, 2-1, 2-2, 4-1, 4-2 → 1	○ 물류기능 강화를 위하여 획지 합병

- 나) 상업용지(변경없음)
- 다) 자연녹지용지(변경없음)
- 라) 기반시설용지(변경없음)
- 마) 지원시설용지(변경없음)

2)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)

가) 공업용지(변경)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 획 내 용		비 고	
I	I-3, 4, 5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장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도시형 공장에 한함)</li> <li>○ 창고시설</li> <li>○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</li> <li>○ 자동차관련시설</li> <li>○ 제1종근린생활시설</li> <li>○ 제2종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)</li> <li>○ 판매시설</li> <li>○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○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</li> <li>○ 공동주택 중 기숙사</li> </ul>	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	
			건폐율	기 정	변 경	
				○ 50% 이하	○ 50% 이하 (공장 창고 용도에 한하여 70% 이하)	
			용적률	○ 300% 이하		
	건축한계선	○ 3m				
I	I-15	용 도	허 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동주택 중 기숙사</li> <li>○ 제1종 근린생활시설</li> <li>○ 제2종 근린생활시설(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)</li> <li>○ 판매시설</li> <li>○ 교육연구시설</li> <li>○ 업무시설(오피스텔 제외)</li> <li>○ 공장(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」의 도시형공장에 한함)</li> <li>○ 창고시설</li> <li>○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</li> <li>○ 자동차관련시설</li> </ul>		
			불 허	○ 허용용도 외의 용도		
			건폐율	기 정	변 경	
				○ 50% 이하	○ 50% 이하 (공장 창고 용도에 한하여 70% 이하)	
			용적률	○ 300% 이하		
	높이	-				
	건축한계선	○ 3m				

## ■ 변경 사유서

도면번호	위 치	변경내용	변경사유
I	I-3, 4, 5, 15	○건폐율 변경	○공장·창고 건폐율 완화를 통한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

- 나) 상업용지(변경없음)
- 다) 자연녹지용지(변경없음)
- 라) 기반시설용지(변경없음)
- 마) 지원시설용지(변경없음)

3)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## II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1.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2. 의견제출: 도시관리계획(안)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## III. 열람장소

- 인천광역시 서구청(도시개발과, 032-560-6873, 서구 서곶로 307)

## IV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)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1652호

# 인천도시관리계획 【공원조성계획(최초):가좌진주 소공원】 결정 입안을 위한 열람 공고

인천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(최초) : 가좌진주소공원) 결정 입안을 위하여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제16조2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8조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. 9. 13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공원개요

- 공 원 명 : 가좌진주 소공원
- 공원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-2
- 면 적 : 780.02m<sup>2</sup>

### 2. 공원조성계획(최초) 결정 입안사유

- 가좌진주1차 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한 구역계선형 및 면적변경에 따라 주민쉼터로 일부 활용되고 있는 대상지 상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소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함

### 3. 도시관리계획(공원조성계획) 결정 입안 총괄조서(붙임1~2)

**4. 관계도서 : 게재 생략**

-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 및 구 홈페이지에서 열람가능

**5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**

-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6. 공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(☎032-560-4492)**

### 붙임1) 총괄조서(가좌진주소공원)

구 분	부지면적 (㎡)	시설면적 (㎡)	건 축 물			공작물 (기)	비 고		
			동수 (동)	바다면적 (㎡)	연면적 (㎡)				
계	780.02	146.55	-	-	-	2	-		
공 원 시 설	소 계	146.55	146.55	-	-	-	2	-	
	기 반 시 설	소계	103.88	103.88	-	-	-	-	-
		도로	103.88	103.88	-	-	-	-	-
		광장	-	-	-	-	-	-	-
	조경시설	-	-	-	-	-	-	-	
	휴양시설	13.50	13.50	-	-	-	1	-	
	운동시설	29.17	29.17	-	-	-	1	-	
	관리시설	-	-	-	-	-	-	-	
	녹지 및 기타	633.47	-	-	-	-	-	녹지율 : 81.21%	
	시설율(% (법정 20%이하)	(146.55 ÷ 1,358.0) x 100 = 18.79%							
건폐율(% (법정 5%이하)	-								